



## 8. 교육훈련

### 8.1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

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활동을 실행하는데 적절한 역량을 갖추도록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한다.

#### 8.1.1 적격성 보장

가. 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의 충족, 적절한 교육훈련 이수 또는 실무경험 확인 등에 근거하여 적격성을 보장한다.

- 1)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종사자
- 2) 안전관리체계 책임자
- 3) 본사 및 현업의 철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자
- 4) 기타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

나. 공사는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교육, 훈련 또는 경험에 근거하여 적격함을 보장하여야 하고, 공사는 이러한 방식을 갖추기 위하여 “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”을 수립하여 관리한다.

#### 8.1.2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

가. 공사는 문서화된 안전업무 수행자의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한다.

나. 공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관리한다.

- 1)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
  - 가)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할 조직을 구성, 운영
  - 나)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정을 내리는 책임이 수반되는 직책의 확인 등
- 2) 안전 직무의 확인
  - 가) 안전업무 수행자의 정의와 함께 필요 안전 직무의 확인
  - 나) 공사의 방침에 따라 정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와 「철도안전관리체계」 8.1.1(적격성 보장)과의 연계
- 3) 직무별, 계층별 필요 역량(실무경험, 교육 및 훈련결과 등)을 확인
- 4) 해당되는 분야의 직무별, 계층별 필요 적성 및 신체 적합성 확인
- 5)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
  - 가) 직무별 계층별 인적자원관리 활동의 정기적 점검 및 시정조치 방안
  - 나) 직원이 교육 및 업무 지침을 준수하고, 필요 시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보장



- 6) 사고 및 사건이나 장기적인 업무결근 등의 경우 특별 조치 방안
- 7) 직무내용을 감안하여 안전업무 수행자를 분야별로 배정 방안
- 8)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양성 및 확보 대책
- 9)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절차 등

### 8.1.3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일관성

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내 직무별, 계층별 교육훈련계획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.



## 8.2 교육훈련

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을 파악하고 주기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, 실행하여야 하며,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피드백 되어 안전업무 수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차기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, 실행 및 유지한다.

### 8.2.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

- 가. 공사는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직무별, 계층별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을 파악한다.
- 나.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기준을 파악하여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.
- 다.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에는 직원, 계약자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.
- 라.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따른다.

### 8.2.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

가. 공사는 안전업무 수행자의 직무 적격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, 시행하며, 교육훈련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「교육훈련규정」 및 「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#### 1)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 분석

- 가)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은 주기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“철도안전관리체계 8.1.2(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)” 기본방침에 준하여 분석되어야 한다.
- 나) 공사의 환경변화나 안전업무 수행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을 파악한다.

#### 2) 교육훈련 목표설정

- 가) 교육훈련 목표설정은 안전업무 수행자의 안전의식의 함양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, 기술 수준과 업무숙련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정
- 나) 교육훈련의 목표는 “철도안전관리체계 8.1.2(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의 수립)” 기본방침에 따라 설정
- 다) 교육훈련의 성과를 기반으로 설정
- 라) 목표는 실천 가능하여야 하며, 가능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정

#### 3) 교육훈련 계획수립



- 가) 교육훈련 대상의 선정
    - (1)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의 책임, 능력 등 고려
    - (2) 안전업무 수행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위험도 고려
  - 나) 교육훈련의 시기, 과목 및 시간
    - (1) 운전업무종사자,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 시행하며,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, 철도 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,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,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
    - (2) 그 외 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은 분기별 3시간 이상 시행하며, 교육내용에는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규정,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,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등을 포함
    - (3)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 이외의 교육훈련의 시기, 과목 및 시간은 “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”에 따라 결정
  - 다)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, 시설 및 장비
  - 라)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결과의 기록 유지 방안
  - 마) 교육훈련을 위한 자원조달 및 목표관리 방안
  - 바) 교육훈련 효과에 대한 평가방법
  - 사)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방안 마련 등
- 4) 교육훈련의 시행
- 가) 안전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.
    - (1)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필요성(요구사항)의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교육훈련 수준에 알맞은 교육생을 선발
    - (2)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 교육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
    - (3) 이전의 교육훈련을 파악하여 반영
  - 나) 교육훈련은 강의(이론)및 기능(실습)교육을 병행하여 실시 가능
  - 다) 교육훈련 시행 시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
  - 라) 교육훈련 담당자는 공사의 「교육훈련규정」 및 「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」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공사의 방침에 따름
  - 마) 교육훈련 실시 후 교육훈련 일지를 작성하고 교육생의 서명을 받아 관리
  - 바) 교육훈련 일지에는 교육명, 교육구분, 교육기관, 교육방법, 교육일자, 교육시간, 교육강사, 교육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
- 5) 교육훈련 평가
- 가) 교육훈련 실시 이후 교육훈련 평가 실행



나) 교육훈련 평가 시기는 공사의 방침에 의한다.

6) 관련 기록의 보유 방안

7) 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

나. 교육훈련계획 수립 주기는 1년 단위로 한다.

### 8.2.3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통보

가. 교육훈련 평가결과가 안전업무 수행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피드백 되도록 한다.

나. 교육훈련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은 다음과 같고, 세부적인 내용은 공사의 「교육훈련 규정」 및 「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운영규정」에 의한다.

- 1)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안전업무 수행자 스스로 역량 수준 파악
- 2) 안전업무수행자의 부족 역량 향상 방안
- 3)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
- 4) 기타 공사에서 정하는 사항 등